

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

「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등록합니다.

공공데이터 목록 명칭		
변경사항	변경 전	
	변경 후	
변경사유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작성 방법

“공공데이터 목록 명칭” 항목은 당초 제출한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[별지 제1호서식]의 “공공데이터 목록 명칭(국문)”과 동일하게 적습니다.